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· 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6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이종욱 · 박용갑
이연희 · 이건태 · 손명수
이재관 · 송기현 · 이상식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~40%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.

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.

특히, 지입제로 영세·개인화되고,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,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, 산업통상부장관이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3조제2항).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(제2호만 해당한다)·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, “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
 - 가.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세
 - 나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
2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

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<u>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세</u></p> <p>2. 「<u>개별소비세법</u>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<u>교육세법</u>」 제5조제1항, 「<u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</u>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<u>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세</u></p> <p>나. 「<u>개별소비세법</u>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<u>교육세법</u>」 제5조제1항, 「<u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</u>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<u>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</u></p> <p>2. 「<u>국가자원안보 특별법</u>」 제23조에 따른 <u>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